

산업안전 Q&A

Q

전임 안전관리자가 작성했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 중 사용 항목별 금액이 부적절하여 일부 계획금액을 변경하고 세부계획을 새로이 세웠으나 발주처에서 이를 문제삼아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계획금액이 유동적(사용기준내에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측 주장이 맞는지요.

또한, 타워크레인(자가장비) 완성검사시 일부 부품의 교체를 명령받아 시행하였는데 부품비용과 설치수리비(인건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품들 중 일부만이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되어 순수부품비용의 합산금액 중 해당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인건비 부분에 적용하여 이의 일부를 안전관리비로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 또한 적법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 2002-15호) 제7조 제1항에 의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동 기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2의 동 기준에는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내용이 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교체 비용(부품비 및 인건비)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 및 제58조에 의하면 노동부령에 정하는 위험기계·기구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사의 승강기(덤웨이터)는 용량 0.3톤, 바닥면적 0.88㎡, 높이 약 2.5m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검사대상기계가 아니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검사대상기계에 해당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법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검사대상 승강기는 “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 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 규정하고 있어 적재하중이 0.3톤인 귀사의 승강기는 산안법상 검사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귀사의 승강기가 산안법상 검사대상이 아니라 하는 이유로 산업자원부 소관 법률인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승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승안법상 검사대상에 해당된다면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정보통신공사로써 사무직과 현장직 인원의 비율이 2:1정도 됩니다. 사무직은 전체 공중에 설비시스템 공중이라는 부분으로, 시스템 안정화, 소프트웨어의 개발, 서버의 구축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이에 현장직은 통신장비를 외부에 달아 중앙시령실에서 이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설비시스템 구축하는 분들의 작업은 대부분 장시간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허리의 통증을 자주 호소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인간공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한 의자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건설업·선박 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7조(별표2 제8호)에 의거 안전관리비 총액의 2% 이내에서(별표2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분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분야로 분리발주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정하려고 하니 타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장은 건축물을 짓는데 전기나 통신은 분리발주(시공사가 다름)였지만 건축공종과는 병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기공사의 표준관리비 요율을 건설공사(갑)으로 하여야 되는지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예시표에 의하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경우, 타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등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는 이를 건설공사(갑)으로 분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현장과 같이 한 건축물을 시공하는 동일현장으로써 분리발주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설공사(갑)으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